

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49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1. 5. 17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개정이유

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무상 혼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훈대상자와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여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사용료 감면대상자 중 국가유공자법, 독립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에 있는 보훈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, 【별표3】에 누락되어 있는 보훈대상자 감면대상을 확대 조정하고자 함.(안 제12조 관련 별표3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
- (2)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
- (3)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2항
- (4)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

- (5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
- (6)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의 3
- (7)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
- (8)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5호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기타

- (1) 신규조문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1. 4. 15. ~ 5. 5.)결과 : 의견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(5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3】

사용료 등의 감면(제12조 관련)

구 분	감면율 (할인율)	비 고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50%	
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	50%	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	50%	
「5·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50%	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	50%	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50%	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50%	
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	50%	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	50%	
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)	50%	
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소년소녀가정	50%	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	50%	
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	10%	
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	50% 이내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2조(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<u>군수가 제11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수영장, 헬스장에 한하여 별표3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 <p>【별표3】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4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감면율 (할인율)</th> <th style="width: 45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5·18 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공 등 이용증 소지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의사상자증 소지자 (의상자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)또는 의사자유족증 소지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장애인 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소년소녀가정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 이내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감면율 (할인율)	비고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	50%		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	50%		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	50%		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5·18 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	50%		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	50%		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공 등 이용증 소지자	50%		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의사상자증 소지자 (의상자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)또는 의사자유족증 소지자	50%		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	50%	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	50%		「장애인 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)	50%		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소년소녀가정	50%	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	50%		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	10%		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	50% 이내		<p>제12조(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【별표3】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4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감면율 (할인율)</th> <th style="width: 45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소년소녀가정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 이내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감면율 (할인율)	비고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50%		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	50%		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	50%		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50%		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	50%		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50%		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50%		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	50%	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	50%		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)	50%		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소년소녀가정	50%	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	50%		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	10%		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	50% 이내	
구 분	감면율 (할인율)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5·18 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공 등 이용증 소지자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의사상자증 소지자 (의상자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)또는 의사자유족증 소지자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장애인 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)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소년소녀가정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	1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	50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감면율 (할인율)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)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소년소녀가정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	1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	50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86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.

1.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
2.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.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
3.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상 상이등급 1급·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
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5조(고궁 등의 이용)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를 준용한다.

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참전유공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6·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.

- 가. 6·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(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군인
- 나. 「병역법」 또는 「군인사법」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
- 다. 6·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
- 라. 6·25전쟁에 참전(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)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
- 마.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·통제를 받아 6·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

□ 5·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52조(고궁 등의 이용 지원)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.

1. 5·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
2. 5·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. 이 경우 선순위자가 5·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
3.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·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
□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58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국가유공자”는 “특수임무유공자”로, “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”은 “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”으로 본다.

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제8조의3(고궁 등의 이용지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·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.

1.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
2.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

□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7조의2(고궁 등의 이용지원) ① 법 제15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의사상자. 다만,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.
2.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. 다만,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

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.

3.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

□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“억류지출신 포로가족”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,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5. “등록포로”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.